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체육진흥단체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격선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기부서와 권리확보서류도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 2. 5. 선고 98다24136)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공매를 대행하는 ○○자산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공매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공매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공매를 의뢰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공매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자 문화재청은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용수익허가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을 보면, 국가와 청구인간에 취득이전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러한 기부채납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과 수영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